

공동체라디오 허가신청 관련 예상 질문

1) 공동체라디오는 기존의 라디오 방송과 다른 건가요?

○ FM주파수를 사용하는 라디오방송이라는 점은 같지만 출력이 작고 (10W 이하), 시, 군, 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.

-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며,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소식 등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.

※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: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(방송법 제2조 제3항)

2)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 공적 자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-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운영계획이 적정한지, 방송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인지, 방송법에 규정된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.

3)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비영리 법인이면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방송법 제8조 제14항에 따라 정부, 지자체, 종교단체, 정당, 영리목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

4) 지자체 출자·출연 기관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○ 방송법제8조는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지자체 출자·출연 기관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단, 기부, 후원, 협찬 등은 가능합니다.

5)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설립예정 법인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, 준공검사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됩니다.

※ 신규사업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, 준공검사 후에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6) 설립예정 법인이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, 구체적인 법인 설립계획, 정관(안)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에 대한 의지나 구체성을 평가하게 됩니다.

-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계획, 정관(안), 자본금, 이사구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, 창립위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으로 남겨 공증을 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.

7) 비영리법인의 경우, 이미 설립된 법인이 정관 변경 과정을 통해 목적 변경과 목적에 따른 사업변경 등의 과정만으로 방송국 운영을 할 수 있나요? 아니면 새로 법인을 설립해 추진해야 하나요?

- 반드시,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단, 사업계획 심사 시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.

- 법인 혹은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, 구성현황, 설립 배경, 주된 목적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사를 운영하기 적합한지 심사하게 됩니다.

8) 이사 등 임원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나요?

○ 임직원 거주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다만 공동체라디오의 설립 취지와 운영목적을 감안할 때, 해당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방송사가 운영되면 지역 사정이나 현안, 문화를 잘 알 수 있어 지역밀착형 매체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9) 초기 투자금, 자본금 최소한의 기준이 있나요?

○ 초기 투자금 및 자본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. 단, 초기 설립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

- 초기에는 설비 등 투자가 필요한 반면 운영이 안정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도 심사 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.

※ 시범사업으로 설립비용을 지원 받았던 공동체라디오 7개사는 2005년 사단법인 설립 당시 5천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.

10) 공동체라디오방송 시설 등 설비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

○ 개별 방송국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. 자세한 비용은 공간, 설치 장비 등을 감안하셔서 직접 산출하셔야 합니다.

11) 공동체라디오방송 시설을 마련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○ 단체 회원 회비나 출자금, 기부금, 후원 등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, 지자체 등과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협의 하셔야 합니다.

- 단,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 할 경우 지원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같이 마련하셔야 합니다.

12) 우리지역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주파수는 직접 찾아와야 하나요?

-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파수를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면,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기술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.
- 희망 주파수 확인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공동체라디오 방송협회나 전문업체에 조언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

13) 우리지역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- 라디오방송은 주파수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제약을 받습니다. 해당 지역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확인 되지 않으면 허가 심사위원회 사업계획 심사에서 제외되고, 신청서는 반려 처리 됩니다.

14)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신청서류 접수하고, 기술심사를 통해 가용주파수가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사합니다. 심사 결과와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'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 신청 요령' 8쪽 '심사절차 개괄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5) 선정되고 난 후 바로 방송을 시작해야 하나요?

- 심사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선정이 되시면 준공검사까지 1년의 기한을 드립니다.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으시고, 시험방송 등을 거쳐 정식 개국하시면 됩니다.

※ 준공검사는 추가 1년까지 연장 가능(전파법 제24조제2항)

16)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?

- 주파수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허가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17)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- 방통위 위원,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,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.

18)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을 따르되,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맞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사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'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신청 요령' 7쪽부터 기술된 심사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9) 외부감사 시 지적을 받았거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, 처분 정도에 따라 계량하여 감점되나요?

-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법령위반 내역에 관한 사항은 계량평가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세부심사항목 '1-3. 신청법인의 건전성·적정성' 부분에서 비계량평가로 평가합니다.

20) 신청서 보정 시 내용 수정이 가능한가요?

- 신청서 보정은 내용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오탈자나 경미한 오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.

21) 신청서 보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
- 4월30일까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정기한은 신청서 마감 이후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22) 어떤 서류를 몇 부 제출해야 하나요?

- 4월 30일까지 신청서, 서약서, 사업계획서, 첨부서류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고,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도 첨부해야 합니다.
- 보정 후 심사본 제출 시에는 보정을 마친 위 서류들의 원본 1부, 사본 12부와 최종본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.

30) 부속서류도 원본 1부, 사본 12부를 제출해야 하나요?

- 보정본을 제출하실 때 원본 1부, 사본 1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
23) 사업자 의견청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심사위원회 운영 기간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순서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24) 사업자 의견청취 시, 주로 어떤 질답을 하고 심사에 어떻게 반영 되나요?

-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과 그 구체적 실현가능성,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답을 하게 됩니다.
- 사업자 의견청취와 관련해 별도로 배정된 점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심사위원의 세부심사항목별 비계량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25) 요약문은 언제 제출하나요?

- 신청서 보정이 완료된 이후에 양식과 함께 추후 작성 요청드릴 예정입니다. 요약문은 시청자 의견 청취 목적으로 게시판에 공개 될 예정입니다.

26)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-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가 「방송법」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해당 규정 상 당사자는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.

27) 시청자 의견 청취란 무엇인가요?

-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가 추진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「방송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.

28) 시청자 의견 청취는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나요?

- 시청자 의견 청취와 관련해 별도로 배정된 점수는 없습니다. 다만, 시청자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받은 내용은 추후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어, 심사평가 시 반영될 것입니다.

29) 현장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-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
30) 방송평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?

- 방송평가회는 「방송법」 제86조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 청취자에 대한 권익보호 기구로 편성, 프로그램, 제작계획, 송출 문제 등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.
- 방송평가회 구성에 대한 세부지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다만, 방송평가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31) 음악/문화/정보제공 장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?

- 해당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단, 정보제공은 지역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.

32) 방송재난과 재난방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

- 방송재난은 태풍·홍수·호우·강풍 등의 자연재난, 화재·붕괴·폭발 등의 사회재난 또는 방송설비의 물리적 결함 등으로 인해 방송 제작 또는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.
- 재난방송은 재난·재해 발생 또는 그 발생을 예방하도록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것을 말합니다.

33)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해 관련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방통위에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?

-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단체에서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.

34) 방송국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데, 주파수 확인 등 신청하는 데 비용을 신청 단체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?

- 이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 사업자 선정은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, 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국의 허가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단체에서 부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.